

2022 연말정산 사내 안내문

2022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제신청을 누락하거나, 세금이 추징되는 부당공제신청이 없도록 안내문을 참조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연말정산 신청기간 : 2023.1.17.(화) ~ 2023.1.30.(월)

2. 연말정산 신청방법

- 연말정산 신청기간 중 학교포탈 상단 [연말정산] 메뉴로 접속하여 연말정산 진행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PDF에서 조회되는 자료로 연말정산 신청내용이 모두 확인 가능한 경우 원본 (출력물)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추가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만 원본서류를 제출

※ 별도 원본서류 제출이 필요한 예 (상세내역은 p.16 참조)

- 1) 홈택스 간소화 PDF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유치원교육비 영수증, 중고등학교 교복구매영수증, 시력교정용 안경구매 영수증,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가톨릭 제외), 월세소득공제 등
- 2)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공시지가 확인자료 등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3) 신규입사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기본공제 대상자 주민등록표 등본 등 제출

■ 유의사항 :

- 연중 퇴사자(12월 말일 퇴사자 포함)는 본교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결정세액 조정을 하여야 함
- 중도퇴직자 및 타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교직원의 경우 2023.1.10.(월) 이후 종합지원센터(구 서비스센터)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하려면 사전동의가 필요하며 자세한 방법은 안내자료 p.24 참조하여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진행 하여야 함
 - ※ 기존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던 미성년인 자녀가 올해 처음 성년이 된 경우에도 최초 1회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함

차 례

I. 2022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3
II. 소득·세액공제 공제항목별 공제요건 안내	4
1. 인적공제	4
2. 연금보험료 공제	5
3. 특별소득공제	5
4. 그 밖의 소득공제	6
5. 세액감면	8
6. 세액공제	8
III. 소득·세액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및 Q&A	12
IV. 제출서류 안내	17
V.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21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21
2. 신규입사자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23
3.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24

I. 2022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구분		2021년	2022년
비과세 소득	자가운전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범위 확대 - (적용대상)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또는 종업원이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 비과세 범위 확대 : 연간 3천만원 → 연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소득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원리금의 40% - 공제한도 : 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 원리금의 40% - 공제한도 : 4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 40%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및 추가공제 (㉠×10%) ㉠ 21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 ㉡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상향 - 상반기(1월-6월) : 40% 하반기(7월-12월) : 80%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및 추가공제 (㉠×20%) ㉠ 22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1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 ㉡ 22년도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21년도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가입대상) 만 34세 이하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공제금액)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 (공제배제) 납입한 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시 공제배제
세액 감면	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 - (감면율)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 확대 - (감면율) 중소기업 : 청년 90%, 청년외 50% 중견기업 : 청년 50%, 청년외 30%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 (공제율) 기타 의료비 15% 난임시술비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 (공제율) 기타 의료비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납세조합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조합에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5%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세액(한도 750만원)에 10%(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2%)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세액(한도 750만원)에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곱한 금액으로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도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 인상 - 1천만원 이하 : 20%, 1천만원 초과분 :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도 지출한 기부금 뿐만 아니라 22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 상향 적용 - 1천만원 이하 : 20%, 1천만원 초과분 : 35%

II. 소득·세액공제 공제항목별 공제요건 안내

1. 인적공제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하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기본공제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주1}	소득금액요건	
		근로자 본인		1명당 : 150만원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배우자				-	-		
		기타 부양 가족	직계비속·입양자			-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동거 ^{주2}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보호기간 연장시 만 20세 이하 ^{주3})					
			^{주1}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주2} 학업·취업·요양 등의 일시퇴거 또는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상 별거(따로 사는 경우)도 동거가족으로 봄 ^{주3}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등은 위탁아동 연장가능						
			♣ “나이요건” 적용기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만 70세 이상				
			2002.01.01 이후	1962.12.31 이전	1952.12.31 이전				
	추가공제	● 다음의 하나를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 각각의 추가공제를 적용							
추가공제		공제금액	공제요건						
경로우대자공제		1명당 100만원	만 70세(1952.12.31 이전 출생) 이상						
장애인공제		1명당 200만원	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 지원받는 장애아동 ^{주1} 포함),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주2}						
부녀자공제 ^{주3}		연 50만원	총급여액이 41,470,588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소득 유·무 불문)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족 공제 ^{주3}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주1} 비장애아동이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제21조①). ^{주2} 암, 중풍, 백혈병, 치매 등의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주3} 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를 적용)									

2. 연금보험료 공제

- 회사에서 급여지급시 원천공제한 연금보험료의 경우 기재할 필요는 없음. 다만, 별도로 납입한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지역연금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또는 납부확인서 제출할 것.
- 올해 다른 회사에서 이직한 신규 입사자의 경우 전(前)회사에서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종(전)근무지의 연금보험료”란에 기재할 것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연금보험료 공제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 ^{주1}
	공무원연금보험료 등	전액	
	^{주1} 2022.01.01 ~ 12.31일까지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가능)		

3. 특별소득공제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보험료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다른 회사에서 이직한 신규 입사자의 경우 전(前)회사에서 납부한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는 “종(전)근무지”란에 구분하여 기재할 것.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건강·노인장기·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
* 근무기간 중에 별도로 납입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또는 납부확인서 제출할 것.			
주택자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 본인(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 포함)이 근로자 본인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아래의 공제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차입금(전세보증금 등)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금융기관 차입금	개인간 차입금
	공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일 또는 전입일^{주2}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주3}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입주일 또는 전입일^{주2} 중 빠른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주3}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1.2%)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공제금액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	
^{주1} 외국인 경우 전입일이란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등록일,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신고일을 말함. ^{주2} 임대차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차입금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허용.(‘14.02.21 이후분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을 연장(갱신)하는 경우 : 전세계약 연장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 •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 이사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주택 자금 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 본인(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 포함)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본인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동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구분	2013년 이전 차입한 차입금	'14년~' 18년 차입한 차입금	'19년 이후 차입금	
		공 제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일 것 국민주택규모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로서, 연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이하 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일 것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일 것.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일 것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일 것.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일 것. 	
		차 입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03.12.31 이전 차입금 및 비거치식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포함) 소유권(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할 것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한도 				
		구 분		상환기간 또는 상환유형		공제한도
		2015.01.01 이후 차 입한 차입금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만원
				기타 대출		연 500만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300만원
'12.01.01~' 14.12.31 차입금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만원		
		기타 대출		연 500만원		
2011.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		10년 이상 15년 미만('03.12.31이전 차입금만)		연 600만원		
		15년 이상 30년 미만		연 1,000만원		
		30년 이상		연 1,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p>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분양권, 주택입주권)로서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p>						

4. 그 밖의 소득공제

○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기재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개인연금저축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을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의 40%(공제한도 : 200만원~5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2015.12.31. 이전 가입자와 2016.01.01. 이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만 공제신청할 수 있음.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주택마련 저축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말 현재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요건	납입한도	공제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연중 무주택 세대 ^{주1} 의 세대주	연 240만원	납입금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																		
	^{주1} '09.12.31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 1채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에 아래의 공제율(10% ~ 100%)을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 상		공제율	공제한도																		
	• 벤처·전문투자조합 등에 투자		10%	종합소득금액의 50%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 (거주자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함)*		3,000만원 이하		100%																	
	• 벤처조합·벤처기업 등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																			
* 소득공제대상 투자금액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공제금액 한도는 연 300만원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형제자매 등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전통신장·대중교통사용분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①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② 추가공제																					
	①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Min(㉠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																					
	② 공제가능금액 :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는 금액 중 다음의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신용카드</th> <th>직불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 등*</th> <th>전통신장</th> <th colspan="2">대중교통</th> <th>소비증가분**</th> </tr> <tr> <td></td> <td></td> <td></td> <th>1월-6월</th> <th>7월-12월</th> <td></td> </tr> </thead> <tbody> <tr> <td>15%</td> <td>30%</td> <td>30%</td> <td>40%</td> <td>80%</td> <td>20%</td> </tr> </tbody> </table>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 등*	전통신장	대중교통		소비증가분**				1월-6월	7월-12월		15%	30%	30%	40%	80%	20%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 등*	전통신장	대중교통		소비증가분**																
				1월-6월	7월-12월																	
	15%	30%	30%	40%	80%	20%																
	도서공연비 등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 소비증가분이란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05%) ㉡ (2022년 전통신장 사용금액 - 2021년 전통신장 사용금액 × 105%).																					
㉡ 공제한도 : 총급여수준별 차등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7천만원 이하</th> <th>7천만원 ~ 1억2천만원</th> <th>1억2천만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초과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250만원	200만원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초과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250만원	200만원																				
② 추가공제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신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소비증가분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근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연 1,000만원 한도) 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12.31.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공제요건	공제금액																				
	• 당해연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12.31.까지 청년형 장기펀드(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34세인 사람이 가입대상임)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공제요건	공제금액																				
	• 당해연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5. 세액감면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정 연구기관 등에 연구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50% 세액감면 적용. * 20.01.01 이후 최초로 근무하는 소재·부품·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취업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후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액을 감면. 		
	구 분	청년	청년 이외의 자
	감면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4세 이하 청년^{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0세 이상 자 장애인^{주2} 경력단절 여성('17.01.01 이후 재취업부터)
	감면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 세액감면(15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 세액감면(150만원 한도)* * 14.01.01~'15.12.31 취업자는 50% 감면.
	감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p>^{주1}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나이에서 군복무기간을 뺀 연령으로 나이계산.</p> <p>^{주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포함</p>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원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조약의 교직원 면제조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가된 교육기관(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초청되어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세액의 100% 면세.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수령에대한소득세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내일채움 공제)에 2021년 12월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소득세의 90%(50%,30%)^{주1}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주1. 중소기업 : 청년 90%, 청년 이외 직원 50%, 중견기업 : 청년 50%, 청년 이외 직원 30% 		
성과공유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내국인우수인력의 국내복귀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학위 취득한 경우로서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 감면. 		

6. 세액공제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7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구 분	세액공제액
		공제대상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1명당 1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30만원 + (자녀수 - 2명) × 30만원
		출산·입양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입양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 만 7세 이상 자녀는 2015.12.31.이전 출생자임.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세 액 공 제	연 금 계 좌 세 액 공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본인명의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공제대상금액에 12%(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대상금액 = 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 +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공제				
		구 분		공제대상금액		
		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자	만 50세 미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금액 = Min (① + ②, 연 700만원) 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연 400만원 중 작은 금액. ②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부담금. 	
				만 50세 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금액 = Min (① + ②, 연 900만원) ① 연금저축 납입액과 연 600만원 중 작은 금액. ②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부담금.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금액 = Min (① + ②, 연 700만원) ① 연금저축 납입액과 연 300만원 중 작은 금액. ②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부담금.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금액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에 대한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금액 = Min (전환금액×10%, 연 300만원)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 50세 미만자”의 공제한도를 적용함.						
세 액 공 제	특 별 세 액 공 제	보 험 비	●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공제요건		세액공제액	
			보장성보험료 ^{주1}	• 근로자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보험료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의 12%	
		장애인전용보험료 ^{주2}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의 15%		
		^{주1}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된 보험(종신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주2}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에 지출한 다음의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의료비(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제외) ^{주3}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① 난임시술비	② 근로자 본인 만 65세 이상자 ^{주1}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주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 • 의로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 난임시술비 •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등) 구입비는 제외 	한도없음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산천장이 상하 20%)
		③ 그 밖의 부양가족				
		^{주1} 만 65세 이상자는 1956.12.31.이전 출생자를 말함. ^{주2} 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자로 등록·재등록된자를 말함. ^{주3}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및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지출액에서 제외.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세 액 공 제	특 별 세 액 공 제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의로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일 반 교육비	취학전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도서구입비 포함) •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 중·고생 교복·체육복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 초·중·고생 체험학습비(1명당 30만원 한도) •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및 대학생의 등록금, 입학금 등 • 우리나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해당하는 해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국외교육비^{주1} • 다음의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에 한하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주3} 	1명당 3백만원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초·중·고등학생		1명당 9백만원						
			대학생	전액공제								
		근로자본인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 ^{주2}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공제							
		^{주1} 연말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유학 중인 자녀의 국외교육비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구분</th> <th>국외교육비 공제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고등학생 이상인 경우</td> <td>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가능</td> </tr> <tr> <td>중학생 이하인 경우</td> <td>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거나, 부모 모두와 출국하여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자녀가 유학중인 경우에 한하여 국외교육비 공제가능</td> </tr> </tbody> </table>					구분	국외교육비 공제 여부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가능	중학생 이하인 경우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거나, 부모 모두와 출국하여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자녀가 유학중인 경우에 한하여 국외교육비 공제가능
		구분	국외교육비 공제 여부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가능									
중학생 이하인 경우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거나, 부모 모두와 출국하여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자녀가 유학중인 경우에 한하여 국외교육비 공제가능											
^{주2} 장애인의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는 나이요건 및 소득금액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주3} 근로자 본인이 대학교 재학 중에 학자금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로서 취업이후 동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공 제	제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구분		기부 코드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① 정치 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20	근로소득금액	기부금 × 11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 × 15%(25%) * 3천만원 초과분은 25%					
			② 법정기부금		10	(근로소득금액 - ①)	공제한도 내 기부금 × 20%(35%*) (계량)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2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 1천만원 초과분은 35%								
④ 지 정 기부금	종교단체외	40	소득금액 × 10% + Min(소득금액 × 20%, 종교단체외 기부금)	(단, '19년~'20년 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16년~'18년 기부금: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 '14년~'15년 기부금: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적용)								
	종교단체	41	*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종교단체기부금의 공제금액은 소득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세 액 공 제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의 산출세액의 5% 공제(연 100만원 한도)				
	외국납부 세액공제	<p>해외 파견 등으로 파견국가에 납부한 세액(외국납부세액)^{주1}을 산출세액에서 공제.</p> <p>^{주1}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서 아래의 외국 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p> <p>-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p> <p>* 국외근로 제공대가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임</p>				
	월세 세액공제	<p>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 본인(외국인 근로자 포함)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공제요건</th> <th style="width: 50%;">세액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자이고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 일 것.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td> <td> <p>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 15%(17%*)</p> <p>*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7%</p> </td> </tr> </tbody> </table> <p>*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를 말함.</p>		공제요건	세액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자이고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 일 것.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요건	세액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자이고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 일 것.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p>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 15%(17%*)</p> <p>*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7%</p>					

Ⅲ.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및 Q&A

국세청은 매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의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및 Q&A를 참고하여 부당공제자로 적발되어 세무상 불이익 및 회사 이미지의 실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및 Q&A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새로이 기본공제 신청하는 경우 중복공제 신청 여·부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 를 필히 확인.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가족구성원간의 중복공제 불가. →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해외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등에 대해 인적공제 공제 신청불가 ○ 맞벌이 부부의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가 자녀에 대한 중복으로 공제 신청불가. 또한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도 기본공제신청한 배우자만 공제 신청할 수 있음. - 배우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22년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신청 가능.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도 공제받을 수 없음 * 단, 소득금액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신청 가능.
	주요 Q&A
	<p>Q1.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신청이 가능한지? A1.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의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p> <p>Q2. 연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2.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p> <p>Q3.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3.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p> <p>Q4.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A4.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및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것을 말함.</p>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및 Q&A
주택자금공제	<p>○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불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개인간 차입금의 경우 1개월) 이내 차입하지 않는 경우 공제불가 <p>○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14년~'18년 취득분 : 4억원, '13년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공제 불가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주요 Q&A
	<p>Q1. 회사에서 임직원의 복지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전세자금대출금 상환액 공제여부? A1. 회사에서 지원받은 전세자금대출은 공제대상 주택임차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음</p> <p>Q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면 모두 공제 가능한 것인지? A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는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자료일 뿐,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요건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함.</p> <p>Q3. 오피스텔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저당 차입금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A3.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p> <p>Q4.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4.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음.</p>
주택마련저축	<p>○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
	주요 Q&A
	<p>Q1. 올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이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A1. 연도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p> <p>Q2. 연도 중에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2.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가함.</p>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및 Q&A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2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3년~2024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연도에 공제 가능
	주요 Q&A
	<p>Q1. 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을 3년간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는지 ?</p> <p>A1. 투자금액에 대해서 어느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 3년간 나누어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임.</p>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하여 공제 불가
	주요 Q&A
	<p>Q1.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남편이 결제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신청할 수 있는지?</p> <p>A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카드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신청할 수 없음.</p> <p>Q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배우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신청할 수 있는지?</p> <p>A2. 신용카드는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한쪽배우자로 몰아서 공제신청할 수 없는 것임.</p>
연금계좌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불가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불가 ○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사후환급금 등 포함)는 공제받을 수 없음.(의료비 지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함)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신청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신청할 수 없음
	주요 Q&A
	<p>Q1.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p> <p>A1.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근로자본인이 공제신청할 수 있음.</p> <p>Q2. 만 60세 미만이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지 ?</p> <p>A2.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본인이 지출한 부모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음.</p> <p>Q3. 자녀의 의료비는 맞벌이부부 중 누가 공제받아야 하는 지?</p> <p>A3. 자녀를 기본공제 신청한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p> <p>Q4. 간병비/장례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p> <p>A4. 간병비/장례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p> <p>Q5. 부양가족이 2021.12.31일에 사망하여 의료비가 2022년에 수납된 경우 2022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p> <p>A5. 의료비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는 것이므로 공제 가능함.</p>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및 Q&A
교육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외의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불가(대학원은 근로자본인만 가능) ○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체육시설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불가 ○ 동일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끼리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공제 받을 수 없음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 불가 ○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 불가
	주요 Q&A
	<p>Q1.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교육을 받은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는 경우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1. 백화점문화센터나 학습지 교육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p> <p>Q2. 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A2.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가능함.</p> <p>Q3. 자녀가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A3.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부모인 근로자가 지출한 자녀의 대학교등록금은 부모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p> <p>Q4.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는지? A4.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신청이 가능함.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비 신청이 불가하나,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p>
기부금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불가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불가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p>*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p> <p>**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p>
	주요 Q&A
	<p>Q1.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A1. 해외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소속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음.</p> <p>Q2.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A2.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공제가가능함.</p> <p>Q3.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신청을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A3. 기부금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음.</p>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및 Q&A
월세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공제불가
	주요 Q&A
	<p>Q1.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p> <p>A1.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말현재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p> <p>Q2.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p> <p>A2.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p> <p>Q3.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p> <p>A3.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신용카드등소득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됨.</p>

IV. 제출서류 안내

항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근로자 본인	이종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지(변동)신고서 •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기부금명세서 	종된 근무지 회사	
	재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직장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기부금명세서 	전 직장	
	외국인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인적공제	공통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부24 또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일시퇴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 • 본래의 주소지 및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퇴거 사유별 재학·요양·재직증명서 등 	관련기관	
	입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증명서, 입양관계증명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입양기관	
	기초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증명서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장애 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 사본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등예우 등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이증명서 	국가보훈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해당 의료기관	

항 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주 택 자 차 입 금 공 제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주택 임 차 차 입 금	금융기관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금융기관 근로자 본인	○
		개인간 (거주자간)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 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본인이 직접 작성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상환증명서류	근로자 본인	
	연장(갱신) 또는 이사의 경우	• 연장(갱신) 또는 이사 전 임대차계약서	근로자 본인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 건물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 리미 또는 시·군·구청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또는 상환기간 연장 등에 한함)	해당 금융기관		
		- 분양권계약서 사본(분양권에 한함)	본인보관 또는 분양회사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소기업·중소기업 공제부금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		
투자조합출자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 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 및 증권투자위탁회사 (벤처기업 투자 등은 중소기업청)			
주택마련저축	•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본인이 직접 작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해당 금융기관	○		
	• 현금영수증 연간사용금액확인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항 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연금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해당 금융기관	○	
	장애인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의료비 세액공제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이 직접 작성	○	
	병원, 약국 등에 지출한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해당 의료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해당 요양기관		
	의료용구 구입, 임차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비영수증(의료기기명이 기재될 것) 	의료기기 판매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등 처방전 	해당 의료기관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것) 	안경점		△ (의무제출 아님)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것) 	판매자		
	난임시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임시술 의료비 지출영수증 	해당 의료기관		
	산후조리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후조리원이 발급하는 영수증 	산후조리원		○
실손의료보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보험회사 등	○		
교육비 세액공제	국내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비납입증명서(어린이집·유치원) 	해당 교육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비납입영수증(학원) 	해당 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비납입증명서(초·중·고·대학교) 	해당 교육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비납입증명서(교복구입비) 	해당 판매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학교 수업용도서구입증명서 (학교외 구입분) 	해당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자금대출상환 교육비납입영수증 	한국장학재단 등	○	
	장애인재활 특수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비납입증명서 	해당 특수교육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입증 서류 			
	국외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비납입영수증 	해당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중인 자녀가 유치원, 초, 중학 생인 경우(국내근무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유학인정서 		국제교육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특례확인서 또는 동거사실 증명서 		재외공관			

항 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기부금공제	필수서류	• 기부금명세서	본인이 직접 작성	
	정치자금	• 정치자금·후원금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 기부금확인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 장	△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해당 종교단체	△
		•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 설립허가증		
이외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해당 기부단체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본인이 직접작성	
	•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해당 외국국가에서 발행	
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 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이 직접 작성	△
	•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로자 본인	
	•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서류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근로자 본인	

※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증명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아래의 자료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등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V.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양는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라 하더라도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여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홈택스 메뉴 중 [조회/발급]을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만 조회할 수 있음.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and '상담/제보'.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조회/발급' and lists various services. The '연말정산' (Year-end Settlement) sec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dashed box and contains the following items: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Other visible sections include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기부금영수증', '세금 신고 납부', and '기타 조회'.

아래의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연말정산간소화' (Year-end Settlement Simplification) service page. The page is divided into five steps: 1.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2. 자료제공 동의 신청, 3. 연말정산 자료조회, 4. PDF 다운로드/인쇄, and 5. 회사 제출. Step 3, '연말정산 자료조회', is highlighted with a red dashed box and contains the following options:

- 연말정산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사업소득자)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오류 신고 및 연락처 조회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영수증 발급처 전화번호 조회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page includes service hours: '근로자(연말정산 자료 조회) : 매일 06:00~24:00', '영수증 발급처(공제자료 제출) : 1월1일~7일 06:00~22:00', and '기부금 단체(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06:00~24:00'.

2. 신규입사자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2022년도 중 입사한 임직원의 경우 아래 테두리박스와 같이 근무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월의 체크표시를 해제하고,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월의 체크 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해당 소득·세액공제항목의 지출내역을 조회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 중 재취업한 중도입사자는 전직장의 근무개월수를 포함하여 체크할 것.

<예시 : 2022년 7월 1일에 신규입사한 경우(전직장 근무경험 없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일괄제공 확인(동의)

* 귀속년도: 2022년 | 전체월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번에 내려받기 | 인쇄/점자받기 | 제공동의 현황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688,500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2,772,900	보험료 (Insurance) 2,317,344	의료비 (Medical Expenses) 1,144,100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0	신용카드 (Credit Card) 9,567,778	직불카드 등 (Debit Card) 9,202,004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830,223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Pension Savings) 0	주택자금/월세액 (Housing Funds/ Monthly rent) 0	주택마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0	장기종합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 (LT investment savings/ Venture investment trust) 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0	기부금 (Donation) 861,800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월세액 기본내역 | PDF다운로드 | 인쇄하기/전자점자 내려받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본인공제할목)

취급기관	계좌번호	최초 차입일	최종 상환예정일	상환 기간	연간이자 상환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주택자금/월세액 안내

국민주택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 활용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여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현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의 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으로 조회됩니다.

3.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간소화 자료조회 제공동의현황조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클릭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 [미성년자녀 신청] 클릭

본인인증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인증서]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미성년자녀 신청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인증서]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온라인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①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②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

팩스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①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②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팩스번호 : 1544-7020

세무서방문 신청

[첨부서류]
본인신청 : 신분증
대리인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신청인이라면?]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자료제공자

(1) 본인인증 신청방법

자료제공자인 부양가족이 신청하는 방법으로서 부양가족 명의의 본인인증수단(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아이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서, 상기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란의 “본인인증 신청”을 클릭하여 료조회자 및 자료제공자의 정보 입력후 사용자 인증(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아이핀)을 합니다.

본인인증수단

자료 조회자 (자료를 조회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01225-*

자료 제공자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성명: 김부인
주민등록번호: 830430-*

관계: 김부인
동의범위: 2020년 부터 이후

인증 방법: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I-PIN 인증, 생체 인증

김부인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홍길동이(가)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신청하기

(2) 미성년자인 자녀(만 19세 미만) 신청방법

만 19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부모인 근로자가 아래의「미성년자녀 신청」을 클릭하여 아래의 화면을 통해 자료동의신청을 합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간소화 자료조회 | 제공동의현황조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본인인증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인증서]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미성년자녀 신청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인증서]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귀속년도: 2022년
 주민등록번호: -

<미성년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안내>

1.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부양가족이 만 19세미만의 자녀(2004.01.01 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는 자녀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부모의 인증서로 인증을 하여 신청하면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성년이 된 자녀(2003.12.31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4. 2004년 출생자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성년이 되었으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5. ※ 특히,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는 부양가족 본인의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납입금액 자료를 제3자인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 신청하는 절차로서 실제 소득·세액공제 가능여부와의 관계가 없습니다.

닫기 | 신청하기

방문 신청
 신분증 : 대리인의 영인(정보제공자) 사본, 위임장 [?] 양가족인

(3) 온라인 신청방법

자료조회자(근로자),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모두가 신청가능하며, 아래의「온라인 신청」을 클릭한 후 자료조회자 및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 → 신청하기 → 파일찾기(부양가족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 → 첨부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첨부서류 제출시 (근로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신분증 등)를 PDF 또는 이미지파일(PEG 등)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함.

(4) 팩스 신청방법

아래의「팩스 신청」을 클릭한 후 아래의 화면의 자료제공동의에 필요한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를 클릭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를 출력한 후에 출력한 신청서에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을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합니다.

(5) 세무서 방문 신청

제공동의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자료제공자(부양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인증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마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인증서]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미성년자녀 신청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희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인증서]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온라인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①**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②**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

팩스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①**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②**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팩스번호 : 1544-7020

세무서방문 신청

[첨부서류]
본인신청 : 신분증
대리인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신청인이란?]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자료제공자

세무서 제출 순서



1. 서식 다운로드

본인신청
제공동의신청서 다운로드
대리인신청
제공동의신청서, 민원서류위임장 다운로드



2. 작성

* 첨부서류
본인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신청 : 신청인 신분증사본, 민원서류 위임장
강릉 : 가족관계 확인서류
신청인이란?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정보 제공자



3. 가까운 세무서 접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

구분	서식다운로드	뷰어다운로드
제공동의신청서	 	
민원서류위임장	 	 